

업무절차 및 유형별 출동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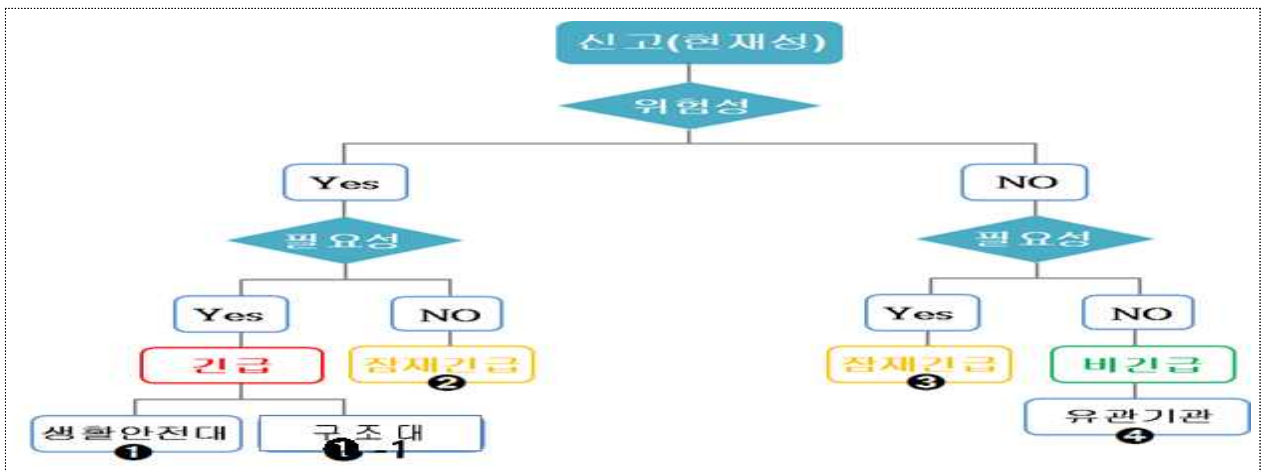
□ 업무절차

- ^{119종합상황실} 접수단계(긴급여부 판단) → ^{구조대·생활안전대} 출동대 편성 및 ^{110, 120} 유관기관(기준참고)

※ 신고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 및 긴급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

□ 출동판단 기준

- (현재성) 현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
- (위험성)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태
- (필요성) 소방대가 긴급히 출동하여 예방대응 등 조치필요가 있는 상황
- (출동계통 및 예시)



구분	위험 정도	출동 부서	출동유형(예시)
①	긴급	안전 센터	- 현재 위험상황으로 구조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)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,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안전조치
①-1	긴급	구조대	- 현재 위험상황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난이도가 있는 구조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) 고층, 나무위, 등의 벌집제거, 위해동물포획(멧돼지, 맹견) 등
②	잠재 긴급	안전 센터	- 현재 출동의 필요는 없지만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 ex)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, 도로상 낙하물로 2차 사고우려 상황 등
③	잠재 긴급	안전 센터	-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 ex) 호우로 인한 긴급배수요청, 도로균열, 나무전도 긴급조치 등
④	비긴급	유관 기관	- 현재 위험성·필요성 없는 상황으로 110으로 이관 ex) 유기동물 보호요청, 단순문개방, 단순 누수·전기차단 등

□ 유형별 출동기준(안)

범례	< 긴급분류기준 >		< 출동 판단기준 >		
	위험 정도	주요 상황(예시)	소방대	유관기관	비 고
범례	긴급 : 위험상황		< 출동 판단기준 > -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하며, 비 긴급 신고는 110으로 이관 -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출동 확인 -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시 출동 -유관기관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, 출동조치 (○ 즉시 조치, △ 상황에 따라 조치, X 요청거절)		
	잠재긴급 : 잠재적 위험상황				
		비긴급 : 위험하지 않은 상황			
구분	위험 정도	주요 상황(예시)	소방대	유관기관	비 고
벌집 제거	긴급	-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	○	△	-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요청
	잠재	-인적이 드문 공원 등 벌집제거	△	X	-인명위해가 없는 경우 자체처리 유도
동물 출몰 및 처리	긴급	-위해동물 포획 (맹견, 멧돼지, 뱀 등)	○	○	-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
	비긴급	-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요청	△	○	-관할 시·군 및 동물구조협회 등 통보 -필요시 장비지원
	비긴급	-개·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	X	○	-시·군·구(동물보호센터) 처리 또는 자체처리 *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·도 조례
장애 물 처리 및 안전 조치	긴급	-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간판 가로수 등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	○	○	-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
	긴급	-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	○	X	
	비긴급	- 건설현장 울타리(펜스), 잔해물 등 시설물 제거	○	○	-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
잠금 장치 개방	긴급	-화재 확인을 위한 문 개방	○	△	-화재 확인 시 유관기관 요청
	긴급	-자살의심 등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	○	○	-경찰요청
	잠재	-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(차량 내 인명이 갇힌 경우 포함)	○	X	
	비긴급	-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(차량 개방 포함)	X	X	-열쇠업체 및 차량보험사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
	비긴급	-수갑 개방	△	○	-수갑개방 : 경찰 등 입회하에 내방 처리
	비긴급	-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	△	○	-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

범례	< 긴급분류기준 >		< 출동 판단기준 >		
	위험 정도	주요 상황(예시)	소방대	유관기관	비 고
		(경찰 요청시)			
비화 재보 확인	긴급	-소방시설오작동, 비상발전기 가동 등	○	○	-유관기관(한전 등) 통보 *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
	잠재	-소방시설 오작동 또는 파손신고	○	×	
	비긴급	-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 생활불편사항 신고	×	○	-건물 소방안전관리자 통보
피해 복구 지원	긴급	-전기(전원차단,공급), 급배수지원 등 -화재 위험성 없는 단순 정전, 누전	○	○	-유관기관(한전,전기안전공사 등) 이관
	잠재	-호우로 인한 긴급 배수요청	○	○	-주택침수, 붕괴우려 등이 있는 경우 *기타 시·군·구에서 처리
생활 끼임	긴급	-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등	○	×	
행사 지원	비긴급	-각종 축제, 행사장, 순찰 및 근접배치	○	×	
감염 병 지원 활동	비긴급	-방역지원, 용수지원 -아프리카 돼지열병, 구제역, 기타 전염병	○	○	-유관기관(시·군·구 방역부서) 통보
기타 생활 안전 활동	잠재	-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사고가 우려 되는 상황	△	○	-유관기관 처리, 필요시 장비지원 *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
	잠재	-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포획 및 로드킬 처리	△	○	-고속도로 : 도로공사 통보 -국도 등 일반도로 : 관리청 통보 *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

※ 본 출동기준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

※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방환경 고려, 재난상황은 똑같은 경우가 없고,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요상황만 예시로 표현함